

의안번호	2220701
의 퇴 인	소병훈의원
회 답 일	2026.9.11.
추계번호	26C4210

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억 4,900만원, 2031년 6억 4,9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2억 9,800만원(연평균 2억 6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구강건강실태조사 (안 제9조제1항)	-	649	-	-	649	1,298	260

주: 보건복지부 기시행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사업비 준용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1항 (구강건강실태조사)	○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. - (현행) 장애인 구강건강실태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음 - (개정) 3년마다 조사	의무규정
2	안 제15조제4항 (노인·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조제1항 (구강건강실태조사)	○	○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2	안 제15조제4항 (노인·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)	×	○ 개정안은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신규 사업의 대상, 범위,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- 참고로, 현재 보건복지부는 총 17개소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·운영하며 비급여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(2026년 기준 예산 89억 2,100만원 편성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질병관리청이 기시행한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사업을 준용하여,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수행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 - 현행법은 국민의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되,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, 2015년, 2025년 등 10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음
 - 질병관리청의 2025년 “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” 사업비 6억 4,900만원을 준용
- 추가재정소요는 실태조사 주기 단축(10년→3년)에 따라 추가로 시행하여야 하는 조사 비용으로 산정함
 - 원칙적으로 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‘단축 후 시행비용’에서 ‘현행 주기에 따른 시행비용’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나, 추계기간(2027~2031년) 내에는 현행 10년 주기에 따른 조사 시점(직전 2025년 다음 조사인

2035년)이 도래하지 않으므로, 차감할 기존 조사비용 없이 추가 시행에 따른 비용만을 산정함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할 경우, 직전 조사 연도(2025년)를 기점으로 추계기간 내 2028년과 2031년에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 - 연구용역비는 기존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예산(6억 4,900만원)을 준용하며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억 4,900만원, 2031년 6억 4,9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2억 9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구분							
구강건강실태조사 (안 제9조제1항)	-	649	-	-	649	1,298	260

주: 보건복지부 기시행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사업비 준용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